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로서, 각 호의 사업의 수행자금과 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자금의 회계를 구분 관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단, 외국영화, 외국공연물, 외국만화, 외국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2개 이상의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할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상환만 기일이 없을 것
2. 투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을 확정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후, 회사의 자본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실적확인서
2.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3. 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신청자 등재분)
4. 그 밖에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투자계약서 사본 등 영 제4조에 따른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소의 변경
2. 영 제4조에서 정하는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의 변경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영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① 영 제6조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의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벤처기업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벤처기업등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용 : 직장소재 관할 확인기관

나.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소득공제용 : 개인 주소지 관할 확인기관

3.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신청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로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⑦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6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⑧ 제7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민원처리기간은 7일로 한다.

⑪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또는 조합의 투자일자는 피투자벤처기업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
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자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2.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에 한함)
 -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대학법인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립 대학 발전기금 회계를 관장하는 법인
 -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

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
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4. 창업기획자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
업전문회사

6.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 법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한하며, 법인 출
자금액의 합이 조합 결성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만 출자 가
능)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8.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
조합으로서 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벤처투자조합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 2일 전)

3. 고유번호증 사본

4.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합 규약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록원부 기재 사항을 말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원부를 갖추

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2.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한다.

3.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한다.

4.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해산하려는 개인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한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개인투자조합 출자총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성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 제16조와 영 제11조에 따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조합원동의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투자수익의 명세

제4장 창업기획자

제12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5. 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2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을 말한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
7.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8.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1. 법인명

2. 법인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을 말한다)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6.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상의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현황의 변동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 사업 인·허가 및 법률 정보제공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제14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8조제1호 각 목의 방식을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27조제2항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업기획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기획자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창업기획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신고서
2.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8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2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이력서
4. 주주의 명부
5.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24조제7항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24조제7항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현황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현황의 변동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영 제25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8조제1호 각 목의 방식을 말한다.

제2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영 제26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

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신고서
2.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증명자료(해당시)
4. 결성총회 의사록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

③ 법 제50조제1항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록원부 기재 사항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제3항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⑥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5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8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41조제2호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청산감사의견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주 소	① (-)			전화번호	③			
	이메일주소	④			팩스번호	⑤			

☐ 투자실적 (최근 3년 이내 창업자 등의 신주를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투자실적)

① 피투자 기업명	② 투자기간			③ 주식수	④ 투자금액 (원)	⑤ 지분율
	취득일자 ~ 회수일자		기간			
		~				
		~				
		~				
		~				
계						

□ **경력** (상장기업의 전현직 창업자 및 임원 경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 등)

① 소속기관	② 재직기간(또는 심사기간)			③ 최종직위	④ 담당업무	⑤ 비고
	시작일자 ~ 종료일자		기간			
		~				
		~				
		~				
		~				
계						

☐ 기타 :

위와 같이 투자실적 및 경력사항을 정히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① 투자실적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② 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 ④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 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기간 :

상기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
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①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1부. ②투자자 명세표 [별지 제4호] ③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별지 제5호] 1부. ④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⑤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 - 통장사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투자의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 1호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2호의 경우 기술성평가확인서 사본 - 3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확인서 [별지 제6호] - 4호의 경우 기술신용평가확인서 사본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주식인수	①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등기 변경신청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②투자계약서 사본 1부.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 권부사채	사채인수 계약서 사본 1부.

투자자 명세표

투자기업 유형 (해당 유형 선택)	☐ 벤처기업
	☐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창업초기기업
	☐ 연간 R&D 지출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기술등급이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창업초기기업
투자기업 사업자 등록번호	

연 번	투자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식수	투자금액 (천원)	투자일자
계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대한민국 거주지 기재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등록법인인감 인
(☎ : -)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제출처	☐ 원천징수 무 ☐ 납세 조	의사 자 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 자일 (투자 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 금액 (투자금 액)	⑯ 투자 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 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 .		
. . . .						. . .		
계						계		

확인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⑯ ~ ⑱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법인명(상호)	설립일자 (사업개시일)		①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주소(본점)			업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 해당여부				여 / 부	
대표자(성명)	용 도		소득공제 증빙용		
과세연도	20 . . ~ 20 . .				
①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					
※ 관련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6]을 참조하여 작성					
1)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고시)일		해당연구인력	② 원	
	20 . . .		명		
재료비	전본품 등		임차료 등		
	③ 원		④ 원		
2)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⑤ 원		
3) 인력개발비	교육비		현장훈련 수당 등		
	⑥ 원		⑥ 원		
4) 기타	⑦			원	
총 계			원		
②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⑧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회계법인 ○ ○ ○ 대표이사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투자확인서의 발급), 시행규칙 제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별지5호(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한 소득공제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및 통계작성

☐ 수집 · 이용 항목

○ 투자자 명세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 ·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대상

○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투자

☐ 제공 정보

○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이용 목적

○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자 명세표 확인 및 통계 작성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투자조합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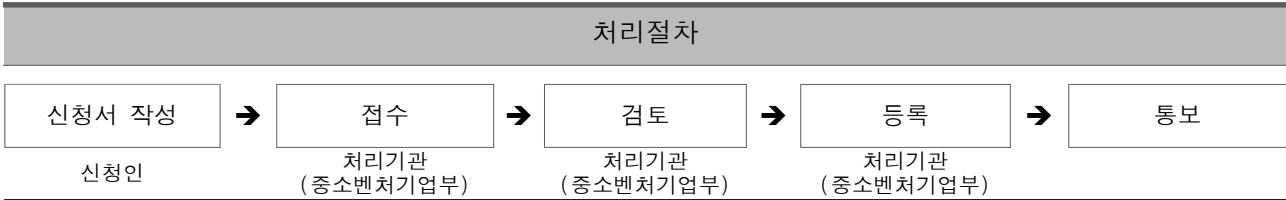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개인투자조합의 규약 사본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결성총회 의사록 1부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잔액증명서 1부 6. 고유번호증 사본 7.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기타 필요 서류 ※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

(제1쪽)

등록번호			장수						
명칭									
				. . . 변경					
				. . . 변경					
존속기간									
				. . . 변경					
				. . . 변경					
소재지									
				. . . 변경					
				. . . 변경					
출자 1좌의 금액									
금				원					
금				원 . . . 변경					
출자 총액									
금				원					
금				원 . . . 변경					
금				원 . . . 변경					
금				원 . . . 변경					
최초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등록					

명칭 · 출자액란(장) 확인

등록번호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등록일	월	원 일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변경일	월	원 일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등록일	월	원 일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변경일	월	원 일	
명칭(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등록일	월	원 일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변경일	월	원 일	
명칭(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등록일	월	원 일	
금 원인	원	금 출자좌수	좌	변경일	월	원 일	

조합원란(장)

확 인	
--------	--

창업기획자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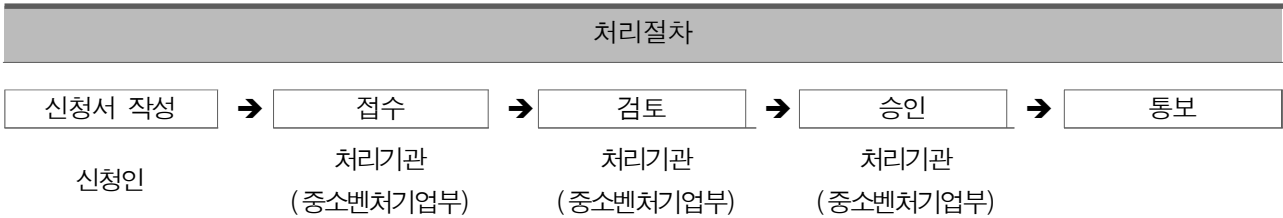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1부 3. 임원 이력서 1부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만 해당합니다) 6.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7. 납입자본금(「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벤처투자법」 제24조제2항제1호 나목 전단에 따른 출자재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벤처투자법」 제24조 제2항제1호 다목 전단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합니다) 증명 서류 1부 8.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1부 9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번호 : 제0000-00호

창업기획자 등록증

1. 회사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승계 전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 후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 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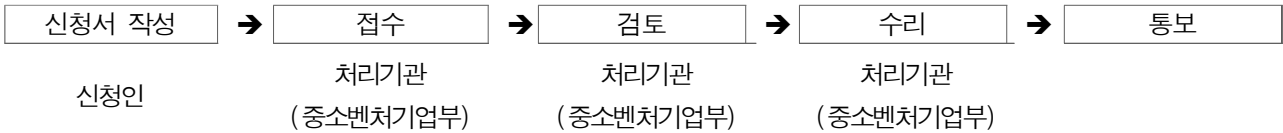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승계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 기타 해당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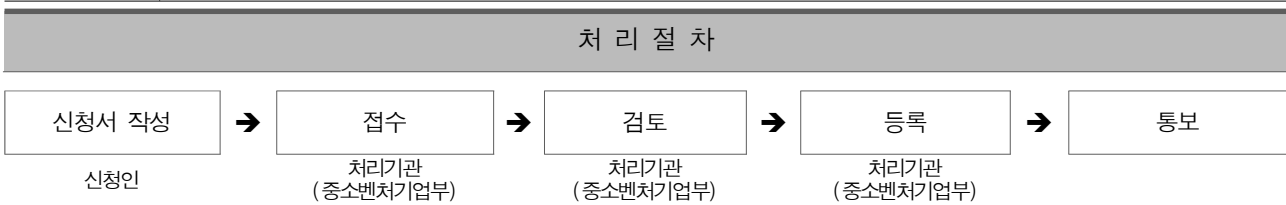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주의 명부 1부 5. 납입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등록번호: 제 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

1. 상호 및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승계 전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 후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 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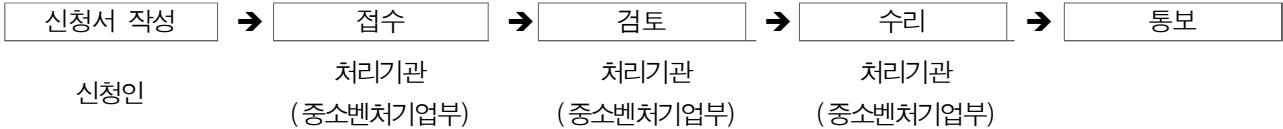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2.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 기타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벤처투자조합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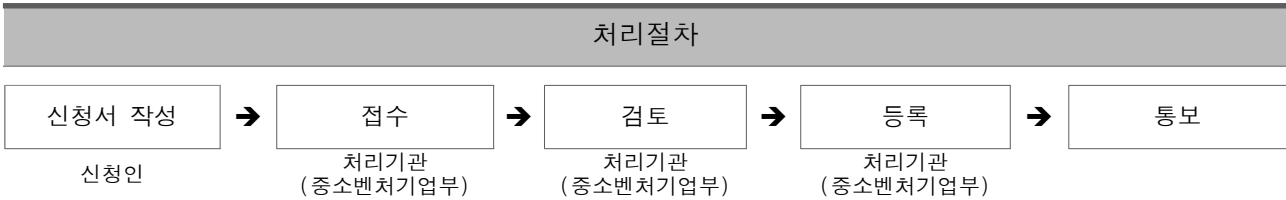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벤처투자조합의 규약 사본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증명자료(해당시) 1부 4. 결성총회 의사록 1부 5.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고유번호증 사본 1부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1부 8.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9.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벤처투자조합 등록원부

(제1쪽)

등록번호			장수						
명칭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존속기간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소재지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출자약정총액									
금				원					
금				원					
				.	.	.	변경		
				.	.	.	등록		
금				원					
				.	.	.	변경		
				.	.	.	등록		
업무집행조합원 명칭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출자 1좌의 금액									
금				원					
최초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등록		

명칭·출자액란(장)

확인	
----	--

등록번호		조합명				
납입출자금 총액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원인	원	금등록일	월	일	원	
금원인	원	금등록일	월	일	원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약정액	금	원	출자좌수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원인	원	금출자좌수	좌	금등록일	월	원일
금원인	원	금출자좌수	좌	금등록일	월	원일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약정액	금	원	출자좌수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원인	원	금출자좌수	좌	금등록일	월	원일
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약정액	금	원	출자좌수			
납입출자금						
금회 출자액			출자누계			
금원인	원	금출자좌수	좌	금등록일	월	원일

조합원란(장)

확인	
----	--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대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시작일	년	월	일	담당 종료일	년	월	일
원인							

가. 약력

$$1) \quad \left(\begin{array}{cccc}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sim \left(\begin{array}{cccc}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2) \quad \left(\begin{array}{ccc}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array} \sim \begin{array}{ccc}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3) \quad \left(\begin{array}{ccc}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array} \sim \begin{array}{ccc}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4) $(\begin{matrix}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matrix}) \sim (\begin{matrix}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matrix})$

나. 투자경력

1) $(\begin{smallmatrix}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smallmatrix} \sim \begin{smallmatrix}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end{smallmatrix})$

2) $(\dots \sim \dots)$

3) $(\begin{smallmatrix} & & & & \\ & & & & \\ & & & & \\ & & & & \\ & & & & \end{smallmatrix} \sim \begin{smallmatrix} & & & & \\ & & & & \\ & & & & \\ & & & & \\ & & & & \end{smallmatrix})$

4) $(\dots \sim \dots)$

2. 일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시작일	년	월	일	담당 종료일	년	월	일
원인							

가. 약력

$$1) \quad \left(\begin{array}{cccc} \cdot & \cdot & \cdot & \cdot \end{array} \sim \begin{array}{ccc}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2) $(\begin{smallmatrix} & & & & \\ & & & & \\ & & & & \\ & & & & \\ & & & & \end{smallmatrix} \sim \begin{smallmatrix} & & & & \\ & & & & \\ & & & & \\ & & & & \\ & & & & \end{smallmatrix})$

3) $(\begin{matrix} & & & \sim \\ & . & . & . \\ & . & . & . \end{matrix})$

나. 투자경력

1) (. . . ~ . . .)

2) $(\dots \sim \dots)$

3) $(\dots \sim \dots)$

전문인력란(장)

한글